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3232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024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323278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동진, 이미주

변론종결 2023. 7. 19.

판결 선고 2023. 8. 23.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부산 금정구 C대 4355.2m² 중 B 지분 4355.2분의 72.8710에 관하여 2020. 12.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1.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66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 D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게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B, D는 아래 <표2>와 같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표1. 보증내역>

1	90,000,000	2016. 6. 15.	2021. 9. 10.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E은행가야지점
---	------------	--------------	--------------	------------	---------

<표2. 대출내역>

1	90,000,000	E은행가야지점	2016. 6. 15.	100,000,000
---	------------	---------	--------------	-------------

나. B, D는 2021. 1. 20.경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E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E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표3. 대위변제내역>

1	2021. 6. 24.	81,000,000	1,691,138	82,691,138
합계	81,000,000	1,691,138	82,691,138	

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지연손해금율 내역>

대위변제일부터 - 현재까지	8%	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
----------------	----	------------------

라. 원고와 B,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B, D가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중 미회수 된 잔액은 5,158,421원이다.

마. 원고는 위 구상금의 채권과 관련하여 B,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차전132225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1. 10. 12. 인용되어 2022. 1. 4. 확정되었다.

바. 한편 B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산 금정구 C 대 4355.2㎡ 중 자신의 지분 4355.2분의 72.871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12. 17.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21.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6656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1	부산 금정구 C	내제지하층F호	78,271,000
2	내제지하층G호	108,915,000	
3	내제지하층H호		
4	내제지하층 I 호		
5	내제지하층J호		
6	내제지하층K호		
7	내제지하층 L 호		
8	내제지하층M호		
9	내제지하층N호		
10	내제지하층O호		

1	부산 금정구 C	내제지하층F호	78,271,000
11	내제지하층P호		
12	내제지하층Q호		
13	내제지하층R호		
14	내제지하층S호		
15	내제지하층T호		
16	내제지하층U호		
17	내제지하층V호		
18	내제지하층W호		
19	내제지하층X호		
20	내제지하층Y호		
21	내제지하층Z호		
22	내제지하층AA호		
23	내제지하층AB호		
24	부산 영도구 AC 토지 중 1/2지분	108,915,000	
25	부산 영도구 AD 토지 중 1/2지분		
26	부산 영도구 AE 토지 중 1/2지분		
27	부산 영도구 AD 건물 중 1/2지분	17,661,000	
28	위 AD 제시 외 건물	14,122,900	
29	부산 영도구 AF 중 1/2지분	2,472,500	
30	강원도 철원군 AG아파트 AH호	31,000,000	
31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18,300,000	
32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390,000,000	
합계	660,742,400		

2) 소극재산

1	AI카드	2017. 3. 9. 대출	342,000
2	2020. 4. 2. 대출	16,761,000	
3	AJ은행	2017. 3. 10. 대출	312,000,000
4	AK카드	2020. 10. 27. 대출	15,000,000
5	AL카드	2020. 12. 16. 대출	17,000,000
6	대한주택공사	전세금	20,000,000

1	AI카드	2017. 3. 9. 대출	342,000
7	신용보증기금	2016. 6. 15. 신용보증	81,000,000
8	금정세무서	체납액	37,590,120
9	부산 금정구청장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525,000
10	체납액	1,862,850	
11	부산 영도구청장	체납액	132,240
12	AM	임대차보증금	20,000,000
13	E은행	2016. 6. 16. 대출	10,760,457
14	주식회사 AN	판결금 채권	128,086,151
15	AO저축은행	2020. 7. 27. 대출	42,500,000
16	부산 부산진구청장	체납액	1,522,030
17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료	21,955,190
합계금	727,037,0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인 2021. 6. 24. 발생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2016. 6. 15.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직후인 2021. 1. 20.부터 B 등은 AJ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B가 자신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가 앞서 인정한 적극재산 외에 주식회사 AN에 대하여 1억 5,600만 원 상당의 기계납품대금채권이 있었고,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경우 적극재산의 총액이 소극재산 가액인 727,037,038원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위 회사에 대하여 1억 5,6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자신이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고 그 당시 B가 2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전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가등기 경료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이성은